

# A W A R D   발   행   규   정

**제 1 조 (목 적)**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 이라 칭한다) 정관 제4조 제3항 및 6항에 의거 Award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발행대상)** 연맹에서 발행하는 AWARD는 모든 HAM 및 SWL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 3 조 (AWARD의 종류)** 연맹에서는 다음의 AWARD를 발행한다.

- ① HLA (HL AWARD)
- ② AKA (ALL KOREAN AWARD)
- ③ KDN (KOREA DISTRICT NUMBER AWARD)
- ④ APA (ALL PROVINCE AWARD)
- ⑤ DMZ AWARD (DEMILITARIZED ZONE AWARD)
- ⑥ 기타 이사회에서 발행을 의결한 특별 및 기념 AWARD

**제 4 조 (AWARD의 발행 조건)** 연맹에서 발행하는 AWARD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, 신청자가 한 장소에서 운용(교신)하여 획득한 QSL만 인정한다.

- ① HLA (HL AWARD)
  - 1. 종 류
    - 1) Class K : 각기 다른 QSL 5매
    - 2) Class O : 각기 다른 QSL 10매
    - 3) Class R : 각기 다른 QSL 20매
    - 4) Class E : 각기 다른 QSL 30매
    - 5) Class A : 각기 다른 QSL 50매
    - 6) 이후 매 50국마다 스티커 발행
  - 2. 신청방법
    - 1) 정 양식의 AWARD 신청서와 2명의 HAM으로부터 확인
    - 2) AWARD 신청 --- GCR + 5,000원 (해외 10 IRCS 혹은 USD 5)
    - 3) 스티커 신청 ----- GCR + 1,000원 (해외 5 IRCS)
    - 4) 1959년 2월 이후 교신 유효
    - 5) 밴드별, 모드별 특기 사항 가능
    - 6) HL9 국의 QSL은 무효
- ② AKA (ALL KOREAN AWARD)
  - 1. 조 건 : 6개의 CALL AREA(1, 2, 3, 4, 5, Ø) 각 1

매의 QSL

- 2. 신청방법 : 1항과 동일
- ③ KDN (KOREA DISTRICT NUMBER AWARD)
  - 1. 종 류
    - 1) KDN 50 : 각기 다른 50개 KDN의 QSL
    - 2) KDN 100 : 각기 다른 100개 KDN의 QSL
    - 3) KDN 150 : 각기 다른 150개 KDN의 QSL
    - 4) KDN 200 : 각기 다른 200개 KDN의 QSL
    - 5) KDN 250 : 각기 다른 250개 KDN의 QSL
    - 6) ALL KDN : 상장 신청일 현재 전 KDN의 QSL
  - 2. 신청방법 : 1항과 동일
- ④ APA (ALL PROVINCE AWARD)
  - 1. 조 건 : 특별시, 광역시, 그리고 9개 도와의 교(수)신한 QSL
  - 2. 신청방법 : 1항과 동일
- ⑤ DMZ AWARD (DEMILITARIZED ZONE AWARD)
  - 1. 조 건
    - 1) 북위 38도선에 있는 나라와 교신하여 QSL을 득할 것
    - 2) 반드시 HL을 포함할 것
    - 3) 북위 38도 선상 나라 : 9H, BY, CT, EA, EP, EY, EZ, HL, I, JA, P5, SV, TA, UJ, W, YA, YI.
  - 2. 종 류
    - 1) Class A : 15 Entity
    - 2) Class B : 10 Entity
    - 3) Class C : 5 Entity
  - 3. 신청료 : 국내 - 5,000원  
해외 - 10 IRCs 혹은 USD 5
  - 4. 신청서류는 국내의 경우 지부의 확인을 받고 해외의 경우에는 자국 연맹 확인을 받는다.
  - 5. 이 AWARD는 남북통일 시까지만 발행한다.

**제 5 조 (이동운용 KDN AWARD)** 연맹에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의한 이동운용 KDN AWARD를 발행한다.

- ① 신청자가 이동운용(교신)으로 득한 QSL카드만 인정한다.
- ② 득한 QSL카드에는 신청자의 호출부호에 이동운용 표시가 기재되어야 한다. (예 : /P, /지역번호, /M 등)
- ③ 신청자는 50W 이하의 출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(단, 4급은 10W 이하)

- ④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신부터 유효하다.
- 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모드(MODE), 밴드(BAND), 혼합(MIXED) 등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⑥ 발행 종류 및 신청방법 등은 제4조 제③항 KDN (KOREA DISTRICT NUMBER AWARD)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 1 조 (목 적)**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제 2 조 (개 정)

- ① 2016. 3. 15. 제4조 개정.
- ② 2017. 5. 13. 제5조 신설.